

시행자 교육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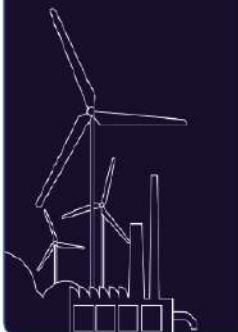
## 2023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절차 및 유의사항

2022. 7. 13(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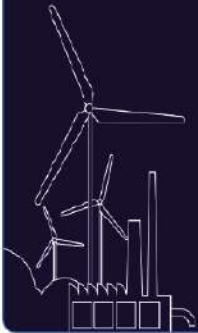
전력기금사업단 지역지원부 조미연

### CONTENTS

- I 최근 제도 개선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 CONTENTS



-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 01

## 최근 제도개선 내용 (사업심의 횟수 축소 3회→2회)

### 개정배경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10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하나 사업계획 **미제출 사례가 증가**에 따라 사업 적기 추진 어려움

#### 현행

1차 사업계획 심의 통보	12월
2차 사업계획 심의 통보	3월
3차 사업계획 심의 통보	6월

#### 개선

1차 사업계획 심의 통보	12월
2차 사업계획 심의 통보	3월
없음	

- ❖ 사업계획 제출 1회 (10월 말)
- ❖ 사업계획 심의 2회 (12월, 익년 3월)



- 10월 말까지 미제출 시행예산 불용
- 특별지원사업은 타지자체로 재배분
- 12월 심의에서 승인보류된 사업에 한하여 익년도 3월 재심의 상정

## 02 최근 제도개선 내용 (소득증대사업 의무 적용대상 완화)

### 개정배경

- 기본 특별 합산 지원금 2억원 이상인 지자체는 지원금의 30%를 소득증대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
-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소득증대사업은 지원금이 적은 지자체에게 불리



## CONTENTS

- I 최근 제도개선 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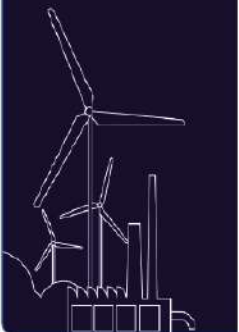
사업종류

기본지원사업의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세부내용	조건
<b>소득증대사업</b>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관광산업시설의 설치*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li> <li>시설물의 재산관리, 수익금 관리 등 규정한 운영규칙 마련</li> </ul>
<b>공공사회복지</b>	공공시설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오락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을 건립*운영하는 사업 사회복지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지원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 후 시설물을 지자체가 소유할 수 있는 사업</li> <li>사회복지시설물을 이용한 진로*사회체육활동*평생교육 등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운영</li> <li>지자체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규칙 마련</li> </ul>
<b>육영사업</b>	교육기자재 및 통학*숙식 지원, 학자금*장학금 지급 및 교육*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전사, 원전지자체만 시행 가능</li> <li>기본지원금의 15~30% 범위 내에서 결정</li> <li>장학금 지급 :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 확인 철저</li> </ul>
<b>주민복지지원</b>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지원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비(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사업 해당지역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실시</li> <li>관련 소재 국내 금융기관과 용자금 대여약정 체결 및 운영</li> <li>주민복지 사업시행자별 기본지원사업의 20% 이내</li> </ul>
<b>기업유치지원</b>	기업의 유치 및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자사업, 임대사업, 보조사업 등 지원사업 실시</li> <li>지원대상, 지원절차,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 조례로 제정</li> </ul>
<b>전기요금보조</b>	<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전력 및 산업용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전 또는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5억원 이상 발전소</li> <li>지원한도 : 지원사업비의 40% 이내</li> </ul>
<b>그밖의지원</b>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역홍보(지역이미지제고) 등 지역특성을 살려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CONTENTS

-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사업계획수립 Process**

Step 01 기금운용계획 수립 \* 제출

Step 02 수립지침 예산 사전통보

Step 03 사업계획 수립 \* 제출

Step 04 사업계획 심의 \* 통보

Step 05 사업비 신청

Step 06 사업시행

## 2단계 수립지침 및 예산 사전통보

- ◆ 수립지침의 개정사항과 사전통보 된 예산 내용 확인 후 사업계획 수립
- ◆ 예산 확인 후 예산 사용계획이 없다면 지역담당자에게 공지 후 공문발송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 통보**

- 위원회 심의 → 산업부/전담기관 → 시행자

8월초

**기금운영계획(정부안) 통보 (가내시 9월)**

예산  
확정  
후

- 3월에 신청한 사업예산의 배분내역을 확인하셨나요?
- 발전소주변지역의 시행요령과 수립지침 내용에 대해 파악되어 있나요?
- 예산내역에 변동사항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지역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사업계획 수립 Process**

Step 01 기금운용계획 수립 \* 제출

Step 02 수립지침 예산 사전통보

Step 03 사업계획 수립 \* 제출

Step 04 사업계획 심의 \* 통보

Step 05 사업비 신청

Step 06 사업시행

## 3단계 사업계획 수립 제출

- ◆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을 10월말까지 전담기관에 제출
- ◆ 제출방법: 전담기관 홈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시스템([www.etep.or.kr](http://www.etep.or.kr)) 등록

**사업계획 수립 제출 (시행자 → 전담기관)**

-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위원회 심의

10월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등 적절한 주민참여 절차**

\*\*\*\*\*

필요시 홈페이지, 우편, FAX 통해 의견접수

**지역위원회 심의**

\*\*\*\*\*

- ☑ 가동\*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 ☑ 가동\*건설 중인 시설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으로 기본지원사업의 연간 지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발전소
- ☑ 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전소



**사업계획 수립 Process**

Step 01 기금운용계획 수립 \* 제출

Step 02 수립지침 예산 사전통보

Step 03 사업계획 수립 \* 제출

Step 04 사업계획 심의\* 통보

Step 05 사업비 신청

Step 06 사업시행

## 4단계 사업계획 심의 통보

◆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지원사업 중요사항 결정

-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의결 (산업부)
- 확정사업 통보 및 후속조치 안내 (전담기관 → 시행자)

12월말

### 위원회 심의사항

- 지원사업계획
- 지원금의 결정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금 배분
- 지원금 회수, 지원사업의 중단
- 지원사업 평가, 결산, 수립지침 등

**사업계획 수립 Process**

Step 01 기금운용계획 수립 \* 제출

Step 02 수립지침 예산 사전통보

Step 03 사업계획 수립 \* 제출

Step 04 사업계획 심의\* 통보

Step 05 사업비 신청

Step 06 사업시행

## 56 단계 사업비 신청 및 시행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지원금의 신청 등)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8조(지원사업비의 신청)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 제9조(사업비의 교부)

- 분기개시일 5일전까지
- E-나라도움, 전담기관 시스템 입력
- 시행자 → 전담기관

- 분기 개시 10일까지 교부
- (지자체) e-호조등록계좌 (발전사) e나라도움가상계좌
- 전담기관 → 시행자
- 기금운영 상 필요시 일정 조정

## CONTENTS



-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 01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

절차적 요소

### 01 주민의견수렴과정 진행

발주법 시행요령 제5조(연간사업계획의 수립) 제9항 지자체장은 사업 계획 수립 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 02 지역위원회 개최 대상자

지역위원회 개최 시행자는 지역위원회 심의 후 회의록을 홈페이지 공개 및 사업계획서류 제출시 증빙제출

### 03 확정사업공개

지원사업계획의 계획, 선정기준, 선정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함

□ 2023...사업계획수립 사전결과 이행 점검  
○ 사전결과 이행여부 점검표 \* 역일에서 (원수작성)

구분	일자	세부 내용	비고
주민의견수렴 (설명회,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포함)	22.9.10	○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의견수렴 - 00명 의견 제출 및 제1차 반론	○
	22.9.20	○ 주민공청회 개최 - 주관 : 00시 00분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사업 item 수정 및 선호사업 의견 청취	2회이상 개회시 추가작성
	22.9.25	○ 주민설명회 개최 - 주관 : 00시 00분 - 장소 : 00층 주민센터 - 참석인원 : 00명 - 개최결과 : 의견 수렴 및 세부사항 수정	○
지역상위원회 운영	22.10.6	○ 지역상위원회 운영(상위원회) - 장소 : 00시 회의실 - 참석인원 : 00명(위원12명) - 실적일자 : 사업계획(안) 확정	지역상위원회 운영시 작성
	22.10.8	○ 지역상위원회 회의록 공개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발행 - 게시기간 : 21. 10. 8 ~ - 내용 : 회의록 내용 및 상위원회	○
확정 사업계획(안) 공개	23. 12월 말	○ 사업계획(안) 공개 현황 - 방법 : 00시 인터넷 게시, 관보발행 - 게시기간 : 21. 10. 25 ~ - 내용 : 지원사업계획 내용 및 추천위원 등	○
	기타사항	21. 11. 7	○ 일부 주변지역 주민 이해제기 - 주민 설문조사 실시해 해결



## 02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

형식적 요소

01 사업계획서, 시설 운영계획서 직인, 서식 모두 작성

02 사업명, 지원사업비 산출내역 최대한 구체적으로

03 전담기관 홈페이지 미입력 시 심의대상 제외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이하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서(00) 시설 운영계획서

사업자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대표자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주요인사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개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대상자분류방안 구분

- 2022년 지원(특별 지원 제외)
-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서
- 기타(필수)

발전소주변지역(이하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서(00) 시설 운영계획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사업명: [선택] | 지원금: [선택] | 사업비: [선택] | 신청일: [선택]

연도	사업명	사업비	신청일	지원금	신청일	지원금	신청일
2022	발전소주변지역개발사업	1000000000	2022.06.30	200000000	2022.06.30	200000000	2022.06.30
2023	발전소주변지역개발사업	1000000000	2023.06.30	200000000	2023.06.30	200000000	2023.06.30

## 03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

### 증빙서류

- 물품구입**
  - 단가 50만원 이상 구입 시 '나라장터' 가격정보 첨부
  - '나라장터' 가격정보 없을 시 기타 견적서 제출
- 토지매입**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 서류
- 공사관련**
  - 지원사업비 산출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공사비산출내역서

### 육영사업

- 장학금**
  - 최소 실거주기간 요건 확인
  - 장학금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최소 1년 이상 주민등록 및 실거주
-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지급대상자 투명한 선정
  - 선정결과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 주민복지

- 지원한도**
  - 시행자별 기본지원금의 20% 이내
  - 단, 연간 기본지원금이 1억원 이하 지역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대책 마련**
  - 세대별 현금지원에 따른 증빙서류 징구, 형평성을 고려하여 세대별 지원금액이 과다하지 않게 유의

부정수급 방지  
투명하게 집행

# 04

##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수립 유의사항

시설물 관리

### 01 시설물의 관리 (발주법 시행규칙 제5조)

지원금으로 설치(구입)한 시설물 및 장비 사업 등에 표시  
설치장소: 알아보기 쉬운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

### 02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시행자가 이행

지원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와 관리는 사업시행자가 이행 취득  
및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 03 시설물 소유와 관리 이관

지자체장이 소유 및 관리를 지역주민단체에게 이관 시 해당단체로 하  
여금 운영규칙 마련 지자체장이 운영에 참여, 소유의 변동관계 파악

[별표] <개정 2011.12.29.>

#### 시설물 등에 대한 표시방법(제5조 관련)

1. 표시 내용: 영 제19조, 제22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설  
치한 시설물 등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표시한다.

[예] 이 ○○○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금으로 설치(구입)된 것입니다.

년 월 일

2. 표시 규격: 시설물인 경우에는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규격으로 제작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당한 규격으로  
제작한다.

3. 설치 장소: 시설물인 경우에는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시설물의  
현관 또는 입구에 부착하고, 시설물 외의 경우에는 적절한 곳에 부  
착한다.

## CONTENTS

- I 최근 제도 개선 내용
- 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종류와 세부내용
- III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절차
- IV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V 부적합 사업유형



## 01 부적합 사업유형

지원사업은 공동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별세대별 지원은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 외는 불인정

### 개별지원 가능

- ☑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민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 주택용전기요금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중복불가)
- ☑ 육영사업 중 장학금 지급
- ☑ 전기요금보조사업
  - 발전사, 한전간 협의 후 감면된 고지서 발행하여 시행

주민복지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  
개별지원 가능



### 개별지원 불가

- ☑ 주택용 태양광발전 설치 지원
- ☑ 재해피해가구 긴급사회복지지원
- ☑ 보훈유공자 차량지원
- ☑ 위기가정 온누리상품권 지급
- ☑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김장, 반찬나누기행사
- ☑ 아파트 옥상방수,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특정개인(단체) 지원사업 지양

## 02 부적합 사업유형

주민화합행사 등 행사성일회성선심성 사업의 관행적 추진은 지양

### 행사성일회성선심성 사업 예시

- ○○ 수제맥주 축제 행사 지원
- ○○ 지역 페스티벌 지원
- ○○ 향 수산물 축제 지원
- ○○ 읍 종량제 봉투 구입 지원
- ○○○ 운영자 /마을리더 선진지 견학





### 03 부적합 사업유형

-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
  -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물품 구입
  - 청사리모델링 및 신축사업, 도로 차선 도색, 도로 보도블록 교체 등
- **부동산 투자사업**
  - 사업시행자가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단순 임대하는 사업 → 소득증대사업 범주에 속하지 않음
- **캐릭터, 입간판, 마을 상징물 등 각종 조형물**
  - 관내 마을 이정표 설치사업
  - ○○시 캐릭터 설치사업
  - ○○읍 ○○리 마을 표지석 설치



## Q & A

